



제 432회 국회 (임시회)
제 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분쟁해결 절차 신청시 소송제기기간 준수 간주 〉

■ 김장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5706호)

2026. 2.

문 화 체 육 관 광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목 차

I . 제안경 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분쟁해결 절차 신청시 소송제기기간 준수 간주(안 제26조제9항 신설)	3
※ 참고자료	9

I. 제안경위

가. 제 출 자 : 김장겸의원 등 10인

나. 제 출 일 : 2025. 12. 30.

다. 회부연월일 : 2025. 12. 3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언론사등에 정정보도, 반론보도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정정보도청구등과 관련한 분쟁이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할 수 있음. 또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규정하면서 언론보도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로 제소기간을 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정 또는 중재 기간이 길어져 제소기간을 도파하는 경우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어 요건 충족이 더 까다로운 「민법」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해야 하므로 피해 구제에 어려움이 있음.

이에 따라 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하면서 동시에 법원에 제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도 제소기간 도과 방지를 위해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안내하는 경우가 많아 시간과 비용이 중복되고 조정·중재 등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피해자가 언론사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또는 중재를 적법한 기간 내에 신청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 그 소가 제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으로써 피해자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6조 제9항 신설).

Ⅲ. 검토의견

1. 분쟁해결 절차 신청시 소송제기기간 준수 간주

(안 제26조제9항 신설)

개정안은 정정보도청구등(정정보도 청구, 반론보도 청구, 추후보도 청구), 조정신청, 중재신청을 현행법에서 정한 적법한 기간 내에 한 경우에는 정정보도청구등의 소가 법정 기간 후에 제기되더라도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 ⑧ (생략) <u><신설></u>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① ~ ⑧ (현행과 같음) <u>⑨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 제18조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중재신청을 적법한 기간 내에 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가 제기한(제22조 제4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소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u> 1. <u>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를 통지받은 때</u> 2. <u>제21조에 따라 조정 결정이 있을 때</u> 3. <u>조정신청이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u> 4. <u>중재신청이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u>

현행법 제26조제3항¹⁾에 따르면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기 기한은 제14조제1항²⁾(제16조제3³⁾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 및 제17조제1항⁴⁾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는바, 정정보도·반론보도 청구의 소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고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경우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추후보도 청구의 소는 형사절차 종결 후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

그러나, 정정보도청구등의 절차가 길어져 제소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정정보도청구등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고, 이를 회피하기 위해 정정보도청구등과 소 제기를 병렬적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시간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언론중재위원회 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함.

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③ 제1항의 소는 제14조제1항(제16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17조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피해자는 제1항의 소와 동시에 그 인용(認容)을 조건으로 「민사집행법」 제261조제1항에 따른 간접강제의 신청을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2)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이 진실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③ 반론보도 청구에 관하여는 따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정보도 청구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4)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추후보도청구권) ① 언론등에 의하여 범죄혐의가 있거나 형사상의 조치를 받았다고 보도 또는 공표된 자는 그에 대한 형사절차가 무죄판결 또는 이와 동등한 형태로 종결 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언론사등에 이 사실에 관한 추후보도의 게재를 청구할 수 있다.

<언론중재위원회 처리기간 현황>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평균 처리일수	33일	19일	22일	21일	18일	19일	18일	15일	21일	25일	26일

출처: 언론중재위원회

현행 제도는 확산성과 사회적 영향력 등 특수성을 지닌 언론보도의 특성상 신속한 피해구제가 필요하고, 언론사등의 편집권과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정정보도청구등의 소 제기의 기간을 3개월 내지 6개월의 단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대한민국헌법」 제27조⁵⁾에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행정소송법」⁶⁾,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⁷⁾ 등 타 입법례에서 행정심판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 등의 처분 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⁸⁾ 및 「민사조정법」⁹⁾ 등에서는 책임재정의 신청 또는

5) 「대한민국헌법」

제27조 ①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형사피고인은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6)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조정신청 시 시효의 중단을 규정하여 피해자의 재판청구권을 두텁게 보호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적법한 기간 내에 정정보도청구등을 한 경우 정정보도 청구등의 소가 법정기간 후에 제기되더라도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여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한편, 개정안은 안 제26조제9항 단서 및 각 호¹⁰⁾의 규정에 따라 조정 결정 또는 조정신청·중재신청의 취하 등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안 제26조제9항 본문에 따른 적법한 기간 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조정절차 등이 종료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도록 함으로써 언론사 등에게 법적 안정성을 부여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됨.

8)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시효의 중단 등) 당사자가 책임재정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시효의 중단 및 제소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책임재정의 신청을 재판상의 청구로 본다.

9) 「민사조정법」

제35조(소멸시효의 중단) ① 조정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이하생략)

10)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26조(정정보도청구등의 소) ⑨ 피해자가 정정보도청구등, 제18조에 따른 조정신청 또는 제24조에 따른 중재신청을 적법한 기간 내에 한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가 제기한(제22조 제4항에 따라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항에 따른 소는 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정보도청구등의 수용 여부를 통지받은 때
2. 제21조에 따라 조정 결정이 있을 때
3. 조정신청이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4. 중재신청이 취하(취하로 간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된 때

개정안에 대하여 문화체육관광부는 피해자가 적법한 기간 내에 언론사 등에 직접 정정보도청구등을 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중재를 신청한 경우에는 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려는 개정안에 동의하는 입장이고, 언론중재위원회 또한 같은 취지의 의견을 제출함.

한편, 한국방송협회는 현행법 제22조제4항¹¹⁾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는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하며, 언론조정절차에 대해 필요적 행정심판전치주의를 취하지 않으므로 조정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소 제기가 가능하기에 해당 언론보도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있는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되는바 조정신청만으로 소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언론분쟁 처리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으며,

2025년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사건처리 소요 평균 기간은 26.1일로 단기간에 처리되었고, 처리에 있어 법정기한인 14일을 초과하는 것은 제도 자체의 한계가 아닌 행정 운영 및 절차 집행의 문제로 보이는데, 조정 지연을 이유로 제소기간의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핵심가치인 신속한 분쟁해결에 반하는 결과를

11)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직권조정결정) ④ 제3항에 따라 직권조정결정에 관하여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제26조제1항에 따른 소(訴)가 제기된 것으로 보며, 피해자를 원고로 하고 상대방인 언론사등을 피고로 한다.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처리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정 절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우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아울러,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개정안 시행 시 조정·중재 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당사자의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는 기대할 수 있어 보이나, 조정·중재 불성립 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전체 분쟁 해결 기간이 장기화되어 언론사의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가 있고, 특히 보도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분쟁의 조속한 종결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380

참고 1**관련 기관 의견**

○ 관련 기관 의견

기관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언론중재위원회 (‘26.1.7.)	• 조정절차가 진행중인 동안 제소기간이 도과하여, 조정불성립 등으로 종결된 후에 정정보도청구 등의 소가 불가능한 경우를 방지하여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 • 피해자가 위원회 조정신청 등으로 피해구제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명한 경우, 적법한 기간 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보아 신청인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개정 취지에 동의

○ 관련 협회 의견

협회명 (의견제출일자)	의견 주요내용
한국방송협회 (‘26.1.11.)	• 언론중재법은 신속한 권리구제를 전제로 단기 제소기간을 의도적으로 설정한 제도로 제소기간 확대는 신속한 분쟁 해결이라는 제도 취지 훼손 우려 - 조정신청만으로 소에 대한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할 경우 언론분쟁 처리기간이 장기화될 우려, 중재법은 직권조정결정에 이의 신청하는 경우 소제기로 간주하고 있으며 언론조정절차에 대해 필수적 전치주의를 취하지 않으므로 조정절차와 별도로 피해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소제기가 가능한바, 안날로부터 3개월, 있은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충분한 기간이 보장 • 조정 지연으로 인한 제소시간 경과문제는 입법이 아닌 제도 운영 개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 - ‘25년 중재위 사건처리 소요 평균 기간은 26.1일로 단기 처리 수준에 해당, 법정기한(14일)을 초과하는 것은 제도 자체 한계라기보다 행정 운영 및 절차 집행의 문제로 평가, 중재법은 신속한 분쟁해결을 핵심 가치로 설정하고 있는바, 조정 지연을 이유로 제소기간 예외를 확대하는 것은 법 취지에 반하는 결과 초래, 법정 처리기한이 준수될 수 있도록 조정 절차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 개선이 우선될 필요
한국인터넷 신문협회 (‘26.1.12.)	• 그간 중재위원회 조정과 법원 소송이 동시 진행되는 사례가 많았으나, 본 개정안 시행 시 조정·중재 절차를 우선 활용하는 경우가 증가하여 당사자의 시간·비용 절감 효과는 기대 • 다만, 조정·중재 불성립 후 소송이 제기될 경우 전체 분쟁 해결 기간이 장기화되어 언론사의 법적 불확실성이 증가할 우려. 특히 보도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도 소송이 제기될 수 있어 분쟁의 조속한 종결과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한 보완 장치 필요